

문서번호 : 장기보상서비스센터 5310-1433

2018. 12. 21

수 신 : 김지원 님

발 신 : 메리츠화재보험(주) 충청손사센터

제 목 : **보험금 청구에 따른 안내**

1. 귀하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보험금 청구하신 접수번호 2018-1695109, 2018-1829519, 2018-2140591(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1종), 증권번호 6S1166563) 관련입니다

3. 상기 보험계약의 약관내용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1종)]****[갱신형 질병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4. 보험금 청구사항에 대하여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0857)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기소작 또는 냉동응고술, 약물밀봉대”는 “수술비” 부지급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에 대해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충청손사센터장

